

배포 2026. 8. 11.(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8. 11.(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면) 2026. 8. 11.(화) 국무회의 종료 시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모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의료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
-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26.2.19. 공포, '26.8.20.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

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국립 대학(치과)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 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
| 담당 부서 | 교육부<br>의대교육지원관<br>의대혁신지원과    | 책임자 | 과장  | 배효진 (044-203-6981) |
|       |                              | 담당자 | 서기관 | 안진영 (044-203-6945)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br>공공보건정책관<br>국립대병원정책과 | 책임자 | 주무관 | 김혜진 (044-203-6946) |
|       |                              |     | 과장  | 김도균 (044-202-251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혁 (044-202-2501) |
|       |                              |     | 주무관 | 전현정 (044-202-2502) |

**붙임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6. . .<br>(제 회)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최교진<br>(교육부장관)<br>국무위원 정은경<br>(보건복지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6.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인가 등 국립대학병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7. ~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그”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을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병원”을 “원장”으로,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학병원”을 “원장”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을 “(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병원”을 “원장”으로,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대학병원장의 추천) ① (생략)                                                                                                               | 제4조(대학병원장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u>교육부장관</u> 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br>-----<br>-----<br>----- <u>보건복지부장관</u> -----<br>-----.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제5조(하부조직) ① ~ ③ (생략)                                                                                                                | 제5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에 따른 부문 · 국 · 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br>----- <u>그 밖의</u> -----<br>-----<br>-----.                                                         |
| 제11조( <u>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u> ) ① <u>대학병원</u> 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u>교육부장관</u> 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 <u>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u> ) ① <u>원장</u> -----<br>-----<br>-----<br>-----<br>-- <u>보건복지부장관</u> -----<br>--.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u>교육부장관</u> 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u>대학병원</u> 에 <u>통보하여야</u> 한다.                                                                | ② <u>보건복지부장관</u> -----<br>----- <u>원장</u> 에<br><u>게 통보해야</u> ----.                                            |

③ 대학병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별 예산 수입·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원장-----  
-----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원장-----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    |                  |
| 연 락 처          | (044) 203 - 6945 |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2 - 2501 |

**붙임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6. . .<br>(제 회)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최교진<br>(교육부장관)<br>국무위원 정은경<br>(보건복지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6.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 1. 의결주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인가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 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7. ~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그”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을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을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 제4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br>같음)                                                         |
| ③ 제1항에 따른 처·부 및 실<br>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br>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br>정관으로 정한다.                                                                   | ③ -----<br>----- <u>그 밖의</u> -----<br>-----<br>-----.                             |
| 제6조(감사의 직무) ① (생략)                                                                                                                       | 제6조(감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br>음)                                                        |
|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br>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br>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u>교육<br/>부장관</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br>-----<br>----- <u>보건<br/>복지부장관</u> 에게 보고해야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br>(생략)                                                                                                               |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br>(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br>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br>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br>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br>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br>이를 <u>교육부장관</u> 에게 제출해야<br>한다. | ② -----<br>-----<br>-----<br>-----<br>-----<br>---- <u>보건복지부장관</u> -----<br>----. |
|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 제10조( <u>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u> 신                                                                                                              | 제10조( <u>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u> 신                                                       |

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

청) ① -----  
-----  
-----  
-----  
---- 보건복지부장관-----  
-----.

1. ~ 3.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  
통보해야 -----.

③ -----  
-----  
-----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  
-----  
-----  
-----  
-----  
-----  
-----  
-----  
-----  
-----  
----- 보건복

|                                                 |                                                      |
|-------------------------------------------------|------------------------------------------------------|
| <u>장관</u> 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 5. (생략)<br>② (생략) | <u>지부장관</u> -----.<br>1. ~ 5.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    |                  |
| 연 락 처          | (044) 203 - 6945 |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2 - 2501 |